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77
------------	-----

발의 연월일 : 2005년 12월 6일.
발의자 : 유동찬 의원외 6인

□ 제안이유

-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률 제명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 이 조례의 근거법률 제명개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함. (안 제1조),
-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삭제함. (안 제6조)
- 참석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u>	<u>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하되 연임할 수 있다.</u>
제6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u>의결하며 가부동수 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u>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u>의결한다.</u>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u>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제10조(수당 등) <u>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관 계 법령 발 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 라. ~ 루. (생략)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 12. (생략)
13. "관계법률"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 가. 도로법. 나. 유료도로법
 - 다. 철도사업법. 라. 철도건설법
 - 마. ~ 쿠. (생략)
14. "다른 법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법률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5. ~ 16. (생략)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8인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7>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